

審 查 報 告 書

1997. 10. 7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7. 9.12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7. 9.19
- 라. 上程日字 : 1997. 9.27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地域經濟課長 徐晚錫)

가. 提案理由

지역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자치에 맞는 중소기업육성의 독자적 지원 제도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목적 규정을 둠(안 제1조).
-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되 용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권을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 기금은 중소기업운용에 필요한 단기 운전자금 및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으로 정하여 기금의 사용범위를 정함(안 제6조).
- 자금의 지원 대상자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사,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서산시에 소재한 자로 제조업 전업율이 50%이상인 사업자로 제한 규정을 둠(안 제7조).
- 용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용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용자 대상자를 심의 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용자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시장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함(안제15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 여건 및 자금사정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촉진하며, 지방자치에 맞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의 독자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중소기업안정기금설치 목적 규정을 두고 기금관리운용 등을 시장이 관리토록 하되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련 용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위탁 관리·운용토록 했으며,

자금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외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
있음.

-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기금을 설치하여 우리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의 형식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점이라 하겠으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
고 판단됨.

- 제정안 제13조4항1호의 상임위원회 「의원1인」을
「위원중1인」으로 하고, 동항 5호 「서산상공회의소
장」을 「서산상공회의소회장」으로, 동항 6호 「충청
은행지점장」을 「충청은행서산지점장」으로, 동항 7호의
「농협중앙회서산시지점장」을 「농협중앙회서산시지부장」
으로, 제13조5항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조례용어의 통
일을 기하기 위하여 「잔임기간」으로, 제18조2항 「충청
남도재무회계규칙」을 「서산시재무회계규칙」으로 수정
해야 될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없음

5. 討 論 : 없음

6. 少數意見 : 없음

7. 審査結果 : 수정 가결
※ 첨부 : 수정안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5조중 '이차'를 '이자에 대한 차액'으로 한다.
- 제13조4항중 1호의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1인'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동항 5호의 '서산상공회의소장'을 '서산상공회의소회장'으로 하며, 동항 6호의 '충청은행지점장'을 '충청은행서산지점장'으로 하고, 동항 7호의 '농협중앙회서산시지점장'을 '농협중앙회서산시지부장'으로 한다.
- 제13조 5항중 '잔여기간'을 '잔입기간'으로 한다.
- 제18조 2항중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을 '서산시재무회계규칙'으로 수정한다.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5조(기금관리. 운용등) 기금은 시장이 관리. 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 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u>이자</u> 보전등을 위해..</p> <p>.....</p> <p>제13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p> <p>① ~ ③ (생략)</p> <p>④ (생략)</p> <p>1. 서산시의회 <u>해당상임위원회</u> <u>의원1인</u></p> <p>2 ~ 4(생략)</p> <p>5. <u>서산상공회의소장</u></p> <p>6. <u>충청은행지점장</u></p> <p>7. <u>농협중앙회서산시지점장</u></p> <p>8 ~ 10 (생략)</p> <p>⑤</p> <p>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u>잔여기간</u>으로 한다.</p> <p>제18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생략)</p> <p>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u>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u>이 정하는</p>	<p>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등) 기금은 시장이 관리. 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 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u>이자에 대한 차액</u> 보전등을 위해</p> <p>제13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p> <p>① ~ ③ (원안과 같음)</p> <p>④ (원안과 같음)</p> <p>1. 서산시의회 <u>산업건설위원회</u> <u>위원장</u></p> <p>2 ~ 4 (원안과 같음)</p> <p>5. <u>서산상공회의소회장</u></p> <p>6. <u>충청은행서산지점장</u></p> <p>7. <u>농협중앙회서산시지부장</u></p> <p>8 ~ 10 (원안과 같음)</p> <p>⑤</p> <p>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u>잔임기간</u>으로 한다.</p> <p>제18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원안과 같음)</p> <p>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u>서산시재무회계규칙</u>이 정하는</p>

제안번호	제 153 호
의결년월일	1997. . . (제 회)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7. 9. 16.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153
----------	-----

제출년월일 : 1997. 5. 28.

제출자 : 서산시장

제안이유

지역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자치에 맞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의 독자적 지원제도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임.

주요 골자

- 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설치 목적규정을 둠(안 제1조).
- 나.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되 용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권을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 다. 기금은 중소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 운전자금 및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으로 정하여 기금의 사용범위를 정함(안 제6조).
- 라. 자금의 지원대상자를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서산시에 소재한자로 제조업 전업률이 50%이상인 사업자로 제한 규정을 둠(안 제7조).
- 마. 용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 바.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용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용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규정 함(안 제13조).
- 사. 용자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시장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15조).

□ 참 고 사 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97. 8. 21 ~ 9. 10(20일)
- 예고방법 : 서산시 공보에 게재 및 관련기관 통지
- 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 예산관계

- 예산액 : 1억('97. 제1회 추경시 확보)
- 처리계획 :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후 관련 금융기관에 적립
에치

○ 자금용자는 '97. 4/4분기 부터 집행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에관한법률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율”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 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적립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등)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련 용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제7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용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서산시안에 소재한 자
2. 제조업 진업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제8조(자금의 차입등)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용자

제9조(용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용자실시 이전에 용자총액, 용자대상사업, 용자한도, 용자조건, 용자신청절차등에 관한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용자신청) ①경영안정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용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용자신청절차, 제출서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용자대상자의 선정) ①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에는 신청서류 검토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용자금액을 결정한다.

②용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제11조에 의한 기금 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서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1인

2. 사회산업국장

3. 기획담당관

4. 회계과장

5. 서산상공회의소장

6. 충청은행지점장

7. 농협중앙회 서산시지점장

8. 신용보증기금 서산지점장

9. 충청남도 중소기업협의회 서산시 위원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2. 자금융자 대상업체의 사업계획 심사

3. 기업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실비변상) 시장은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가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칙

제16조(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허위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결산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준칙(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율”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익이 총매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 타

② 시장(군수)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등) 기금은 시장(군수)이 관리·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련 용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 시장(군수)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제7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용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시(군)안에 소재한 자
2. 제조업 전업율이 50%이상인 사업자

제8조(자금의 차입등) 시장(군수)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군수)은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군수)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등을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군수)은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때에는 신청서류 검토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 ① 시장(군수)는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제정경제국장-군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시장(군수)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정·경제관련 실국과장(군은 실과장) 2~4인
2. 시(군)의회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부의장
3. 제일은행 ○○지점장
4. 충청은행 ○○지점장
5. 농협중앙회 ○○시(군)지점장
6. 신용보증기금 ○○지점장
7.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장
8. 충청남도 중소기업협의회 위원 (○○시·군)
9. 기타 시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제4항 제9호에 의한 기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2. 자금융자 대상업체의 사업계획 심사
3. 기업건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칙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군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결산및 보고) ① 시장(군수)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군) 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재정경제국장-군은 지역경제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시(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